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3. 30.(수)
-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정책국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	금융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수빈 (02-2100-2833)

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제재조치는, 추가 검토를 진행한 이후 심의를 진행할 계획

- 금융위원회는 위원들 간 논의(2022.3.30.)를 거쳐, 현재 금융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,
 - 우선 제재조치 간 일관성·정합성,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,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,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다만, 금융위원회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, 「자본시장법」상 위반사항과 「지배구조법」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제재조치안의 경우, 「자본시장법」상 위반사항은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정책국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	금융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수빈 (02-2100-2833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조 철 (02-3145-7010)
	금융투자검사국	담당자	부국장	윤정숙 (02-3145-7012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양진호 (02-3145-7050)
	일반은행검사국	담당자	부국장	김정렬 (02-3145-7060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김학문 (02-3145-7200)
	특수은행검사국	담당자	부국장	김대진 (02-3145-7205)